

기관추천 특별공급 (북항 월드메르디앙 그랑블루) 신청 안내문

- ▣ 공급명 : 북항 월드메르디앙 그랑블루
- ▣ 공급 위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649-1번지 일원
-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2층, 지상27층, 2개동, 총72세대 중 일반공급 72세대
- ▣ 특별공급 규모 및 내역 : 일반분양 72세대 중 특별공급 39세대 중 기관추천 7세대

▣ 공급대상

구분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타입	세대별 계약면적(m ²)					공급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	계약 면적	계	특별공급세대수					일반 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민영 주택	70.3329	70A	70.3329	34.4983	104.8312	12.8137	117.6449	24	3	4	4	1	2	10	2025년 9월 예정
	70.7536	70B	70.7536	36.0016	106.7552	12.8904	119.6456	24	2	4	4	1	2	11	
	70.3054	70C	70.3054	36.6442	106.9496	12.8087	119.7583	24	2	3	5	0	2	12	
	합 계							72	7	11	13	2	6	33	

구 분		70A		70B		70C		합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5	-	-	1	5	2	10
	장애인	1	5	1	5	1	5	3	15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5	-	-	-	-	1	5
	중소기업 근로자	-	-	1	5	-	-	1	5
	계	3	15	2	10	2	10	7	35

-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²)×0.3025 또는 공급면적(m²)÷3.3058
- ※ 상기 일정 및 세대수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세대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은 외벽면적과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자리에서 버림방식 차이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의거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로 선정 및 통보자

추천 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당첨자 또는 확정자'로 선정 및 통보한 자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후 '당첨자'가 되는 자
예비 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 및 통보한 자로 청약후 특별공급 미달시 추가로 '당첨자'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 될 수 있는 자

■ 무주택 요건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소형 ·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내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 해당기관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근로자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부산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부산보훈지청 복지과	부산경남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 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안내

추천대상자	구비여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필요없음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예금 면적별 ·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자

■ 청약통장 가입 요건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①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하고, 면적별 ·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하고 면적별 ·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자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 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 유의사항

-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특별공급에 각각 중복 청약하여 한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 신청이 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타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단, 동일 아파트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 됩니다.
-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로 통보한 자 또는 해당기관의 확인서(추천서)를 발급 받은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특별공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시 주택형 변경이 불가하며,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 * 예비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청약 신청을 하여야 예비대상자의 지위가 유지되며, 청약 미신청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로 선정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 신청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수 배정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공급신청 지역에 따라 상이) 타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본 주택은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위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 자세한 사항은 본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2.06. (예정)]에 청약홈 또는 당사 홈페이지에서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자는 우선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추천기관의 자체 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특별공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시 주택형 변경이 불가하며,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 ※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당첨취소 및 공급계약 미체결, 공급계약 해약이 있을 경우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대로 공급기회를 제공하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주택의 동·호수 배정은 동·층별 구분없이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며, 당첨된 동·호수의 변경이 불가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동·호수 배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 청약시 본인의 착오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홍보관에서만 가능하며, 해당 은행 창구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 ※ 특별공급 신청일 청약신청을 한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장 재사용 불가, 재당첨제한기한 중 당첨제한 등)
-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값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한 후,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 될 수 있으며,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로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 지역기준) 동안 타 분양 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일정상 정당한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은 별도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 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특별공급 신청후 당첨시 개별통보를 하지 않으며, 혼란 방지를 위하여 당첨자명단에 대한 전화 응대는 하지 않습니다.

■ 일정

모집공고	홍보관 오픈	특별공급신청일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2025년 02월 06일 (목) 예정	2025년 02월 06일 (목) 예정	2025년 02월 17일(월)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모집공고 참조 • 장소: '청약HOME' 홈페이지 및 홍보관 홈페이지 - www.북항월드메르디앙.c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모집공고 참조 • 장소 - 홍보관

※ 상기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절차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추후 다시 통보드리겠습니다.

■ **홍보관**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51번길 48-2
참조)

[문의 : (010)-4420-2500]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모집공고

북항 월드메르디앙 그랑블루 사업지 안내

▶ 현장 위치도



▶ 투시도

